

2026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공고

도내 (예비)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6일

경 상 남 도 지 사

① 추진근거

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11조 및 제14조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「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

②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도내 (예비)사회적기업에 신규 시설·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·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
- 사업예산 : 113백만원 (도비 34, 시군비 79)
- 사업기간 : 2026년 회계연도

③ 참여자격 및 참여제외 대상

- 참여자격 : 도내 본사가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
 -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「사회적기업」
 -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「예비사회적기업」
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「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」

○ 참여제외 대상

- 과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기업
-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
- 현재 약정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
- 공고 기준일 이후에 지정·인증된 (예비)사회적기업
-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
- 최대 5회 지원받은 기업
-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
- 당해연도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

4 지원내용

○ 지원기간 : 약정체결일로부터 2026. 12. 31.까지

- 격년(隔年) 지원을 원칙으로 함

※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 최초 지원은 2년 연속으로 지원 가능

○ 지원금액 : 기업별 20백만원 이내

○ 자 부 담 : 참여기업은 ① 부가가치세 전액과 ②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의 30%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

※ 지원금 및 자부담 예시

- 1) 소요예산이 2,530,000원인 경우(공급가액 2,300,000원+부가가치세 230,000원)
 - 보조금 : **1,610,000원(공급가액의 70%) 지원 가능**
 - 자부담 : 690,000원(공급가액의 30%)
 - 부가세 : 230,000원 별도 참여기업에서 부담
- 2) 소요예산이 33,000,000원인 경우(공급가액 30,000,000원+부가가치세 3,000,000원)
 - 보조금 : **20,000,000원(최대 20백만 원 이내) 지원 가능**
 - 자부담 : 10,000,000원(1,000,000원공급가액 중 지원한도 초과액)+9,000,000원(공급가액의 30%)
 - 부가세 : 3,000,000원 별도 참여기업에서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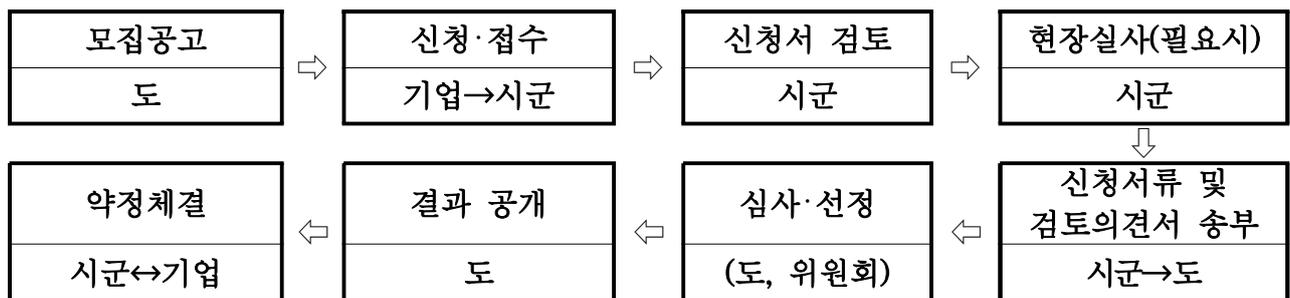
○ 지원항목

- 시설·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
- 생산(용역)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·장비
-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활동에 연계된 시설·장비
-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(지속적 관리·활동이 가능한 물품)
- 사업기간 내 시·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 시설·장비(물품)

○ 지원불가 항목

- 차량(특수장비차량은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 후 결정)
-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·경상경비
- 상품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·포장비 등
-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
(컴퓨터 및 프로그램*은 생산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지원)
- * (지원불가) 월/연 단위 구독형 서비스(SaaS), 단순 범용 OS(Windows 등) 및 사무용 프로그램(한글, 오피스 등), 기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
(지원요건) **자산대장에 등재가능한** '영구라이선스' 구입에 한하며, 생산공정과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활용계획서 등) 필수 제출
-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·장비
(단, 장애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장비 제외)
-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항목
-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
- 법인명의 공간이 아닌 곳에 시설 설치
- 그 밖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

5 선정절차



○ 경상남도 시설장비비 심사위원회 심사(지원대상 및 금액)

○ 심사항목

- 지속적 사업수행 여부(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가능성)
- 생산성 향상(신규제품 생산 연계여부 등) 및 수익향상 여부
- 보조금의 용도 적합성 및 사업비의 편성 적절성 여부
- 기타 일반 현황(사회공헌실적 등)
- 2회차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전 사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

○ 우선선정 대상

-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객관적·정량적 성과를 거둔 기업(예시: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등급 '우수' 이상 등)
- HACCP 인증을 취득한 기업

○ 가점 대상

- SVI(사회적가치지표) 우수 등급 이상

○ 지원 제외 : 전년도 선정된 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기업

○ 결과 공개 :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·군을 통한 개별 통보

⑥ 접수기간 및 방법

○ 접수기간 : 2026. 3. 16.(월) ~ 4. 3.(금) 18:00까지

○ 접수처 : 소재지 관할 시·군(사회적기업 담당부서)

○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직접

-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
- 제출서류 등을 2부(도 제출용, 시군 보관용) 출력하여 제출
-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근무시간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

7 신청서류 : 2부(도 제출용, 시·군 보관용)

- ①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신청서 【 서식 1 】
- ②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·장비 구입 계획서 【 서식 2 】
 - ※ 시설·장비(물품)별 비교견적서 첨부
- ③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【 서식 3 】
- ④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【 서식 4 】 및 증빙자료 ※ 실적이 있을 경우
- ⑤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(지정)서 사본 ※ 원본대조 완료 도장날인
- ⑥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(2023~2025)
- ⑦ 우선선정 대상/가점대상 해당할 경우 증빙자료
- ⑧ 사업성과보고서 【 서식 5 】 ※ 2회차 이상 지원기업만 해당

8 유의사항 및 문의처

- 신청서류 등은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됩니다.
- 구비서류가 누락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·군의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, 해당 기업의 신청서는 반려합니다.
- 사업 신청 관련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,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.
- 참여제한 기업임을 알면서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경남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업무지침」(경상남도)에 의합니다.

○ 문의처

-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(055-211-3485)
- 시·군 사회적기업 부서(문의 및 접수)

시군명	담당부서	전화번호	주 소
창 원 시	일자리창출과	055-225-3354	51435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(용호동)
진 주 시	일자리경제과	055-749-8179	52789)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(상대동)
통 영 시	도시재생과	055-650-5833	53040)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(무전동)
사 천 시	지역경제과	055-831-3080	52539)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김 해 시	민생경제과	055-330-3454	50924)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(부원동)
밀 양 시	지역경제과	055-359-5058	50420)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(교동)
거 제 시	민생경제과	055-639-4125	53257)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(고현동)
양 산 시	민생경제과	055-392-3302	50624)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(남부동)
의 령 군	경제기업과	055-570-3142	52140)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
함 안 군	경제기업과	055-580-2684	52043)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
창 녕 군	일자리경제과	055-530-1175	50317)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
고 성 군	경제기업과	055-670-2493	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
남 해 군	경제과	055-860-3233	52425) 경남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
하 동 군	지역활력추진단	055-880-2193	52333)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
산 청 군	경제기업과	055-970-6812	52221)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
함 양 군	일자리경제과	055-960-4723	50036)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
거 창 군	경제기업과	055-940-3352	50132)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합 천 군	일자리경제과	055-930-3392	50231)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

- 붙임 1. 【서식1】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.
 2. 【서식2】 (예비)사회적기업 시설·장비 구입 계획서 1부.
 3. 【서식3】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
 4. 【서식4】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1부.
 5. 【서식5】 사업성과보고서 1부. 끝.

2. 시설·장비 보유현황 ※ 구분 : '시설' 또는 '장비' 기재

구분	시설장비명	구입연도	기능 및 용도	시설장비 상태(√)		
				양호	보통	불량

3. 시설·장비 구입계획 ※ 구분 : '신규' 또는 '교체' 기재

우선 순위	구분	시설장비명	수량	소요예산(천원)	구입예정시기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
※ 시설·장비(물품)별 비교견적서 첨부 필수

3-1. 구입 희망 시설·장비 세부내역

사 진	○ 시설·장비명 :
	○ 용도 및 기능 :
	○ 구입 필요성 :
	○ 설치 장소 및 방법 :
사 진	○ 시설·장비명 :
	○ 용도 및 기능 :
	○ 구입 필요성 :
	○ 설치 장소 및 방법 :

※ 시설·장비 사진(인터넷 조회 또는 제품 카달로그 등 캡처) 첨부

4. 소요 사업비

(단위 : 원)

총 소요 사업비(A+B)	지원금(A)	자부담(B)	비 고

※ 자부담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재 (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)

5. 연도별로 지원받은 시설·장비 내역

연도	구입한 시설·장비명	사업비(보조금/자부담)	활용도 및 매출향상 등 효과
		- 보조금 천원 - 자부담 천원	

6. 시설·장비 확충을 통한 기대효과 및 기타의견

기 대 효 과	시설·장비 구입에 따른 고용 창출, 매출 증대,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으로 기재
기 타 의 견	기업 애로사항 및 시설·장비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기재

신청기업명 :

대표 :

(인)

붙임 시설장비별 비교견적서 00부.

【 서식4 】

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

1. 총괄

연도	공헌내용	수혜대상	수혜인원	금액(천원)
년	계			
	기부금 제공			
	현물 제공			
	서비스 제공			
	기타			
년	계			
	기부금 제공			
	현물 제공			
	서비스 제공			
	기타			

2. 세부사항

2-1. 기부금 제공 현황

일시	지원기관	수혜대상	수혜인원	금액(천원)
합계				

2-2. 현물 제공 현황

일시	지원기관	수혜대상	수혜인원	금액(천원)
합계				

2-3. 서비스 제공 현황

일시	지원기관	수혜대상	수혜인원	금액(천원)
합계				

2-4.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

일시	협력기관 및 단체	활동 내용	기타
합계			

2-5.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

○ 전반적인 조직 운영과정에서 기존 운영방식을 혁신하려고 했던 노력 및 성과
 ○ 생산 판매과정에서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
 ○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 등

사회서비스 공헌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업명 :

대표 :

(인)

증빙자료 1. 기부금 입금 증빙자료 00부.

2. 수혜기관 확인서 00부.

3. 기타 증빙자료(언론보도 및 사진자료 등) 00부.

【 서식5 】
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사업성과보고서 * 2회차 이상 지원기업 해당 </div>			
시 군 명			
기 업 명			
사업기간		사업장소	
사 업 비	총 천원	도 비	천원 (%)
		시 군 비	천원 (%)
		기 타	천원 (%)
사업목적	○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		
사 업 추진방법	○ 사업대상 등을 기재		
추진실적	○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		
사업성과	○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,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○ 2회차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전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(미제출 시 감점)		

신청기업명 :

대표 :

(인)